

품명	산업용 변압기	
HS code	8504.34	
관세율(%)	MFN('26)	FTA
	1.6	0
추가 관세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15%		



▶ HS 8504.34의 對미 수출은 '23년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24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6년 3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70.4% 상승함

한국의 연도별 對미 수출동향(HS code 8504.34)

(단위 : 천 불, %)

연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2022	17,554	106.3
2023	79,225	351.3
2024	65,829	-16.9
2025	104,362	58.5
2025.3	8,240	-73.2
2026.3	47,004	470.4

선정 사유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 해당 품목은 500kVA 초과 산업용 변압기로, 과거에는 국내 발전소 중심의 내수형 품목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미국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와 맞물려 수출형 품목으로 전환되고 있음
- ▶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산, 노후 전력망 교체, 반도체 공장 증설 등으로 대용량 전력설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산 전력기기의 對미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 ▶ 이에 따라 미국 전력 인프라 확충에 따른 대용량 변압기 수요 증가가 한국산 산업용 변압기의 對미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 품목을 '26년 1분기 수출 증가 품목으로 선정함

▶ 동 품목의 하위 품목(계기용 변압기, 전압 조정기, 용량 500kVA 초과 2,000kVA 이하 변압기, 용량 2,000kVA 초과 변압기) 중 용량 2,000kVA를 초과하는 변압기(HSK 8504.34-9030)가 對미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한국의 연도별 對미 수출동향(HS code 8504.34)

(단위 : 천 불)

구분	HSK	품목명	수출금액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총계	65,829	104,361	8,240	47,004
1	8504.34-1000	계기용 변압기	0	0	0	0
2	8504.34-2000	전압 조정기	0	2	0	0
3	8504.34-9010	용량이 500kVA 초과, 2,000kVA 이하인 것	31,080	13,636	3,544	892
4	8504.34-9030	용량이 2,000kVA를 초과하는 것	34,749	90,723	4,696	46,112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우리나라 對미
수출동향

(HS 8504.34)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850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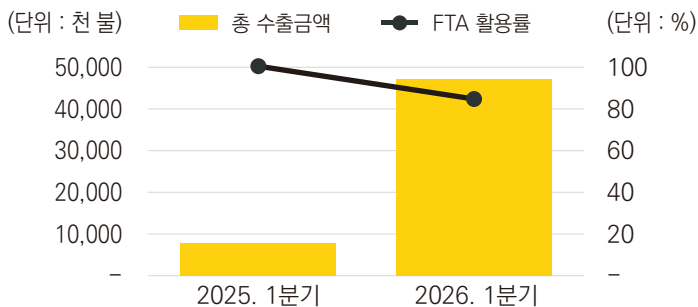
▶ HS 8504.34(산업용 변압기) 對미 수출금액은 전년도 1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FTA 활용률은 감소함

- FTA 활용은 '25년 1분기 100%, '26년 1분기 84.5%로 나타남
-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은 CTSH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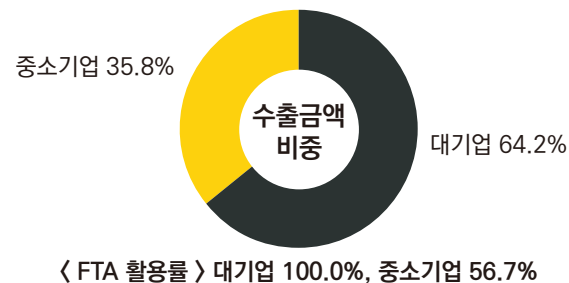
▶ '26년 1분기 기준, HS 8504.34호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64.2%, 중소기업 35.8%임

- 해당 품목의 '26년 1분기 기준 FTA 활용률은 대기업 100%, 중소기업 56.6%임

[HS 8504.34 對미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2025.3, 2026.3)]



[HS 8504.34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2026년 1분기)]



미국
수입 및 관세 현황

▶ '26년 1분기 수입 금액 기준 미국의 HS 8504.34의 5대 수입국은 멕시코, 한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수입액 기준 2위에 위치함

미국의 HS 8504.34 주요 5대 수입국별 수입금액 비중(2024~2026.3)

(단위 : %)

구분	멕시코	한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26.3	45.8	19.8	10.0	8.7	5.1
'25	35.7	13.9	15.8	15.6	1.1
'24	33.1	16.1	22.9	4.9	0.3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미국의 HS 8504.34의 5대 수입국(멕시코, 한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의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미국의 HS 8504.34 주요 5대 관세율 및 FTA 원산지결정기준

국가명	MFN(%)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협정	특혜세율(%)	
멕시코	1.6	USMCA	0	CTH or RVC 65/55%*
캐나다				
독일		-	-	-
한국		한-미	0	CTSH
중국		-	-	-

자료 : USITC

주1) 비원산지 재료의 HS 4단위 세번이 변경되어야 하되, 제7225호, 제7226호 또는 제7326호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함. 다만,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제법 적용시 역내부가가치가 65% 이상이거나, 순원가법(Net Cost Method)을 적용하는 경우 역내부가가치가 55% 이상이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

시사점

- ▶ HTSUS 8504.34.00은 미국 포고령 제1102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232조 추가관세가 한시적으로 조정(25%→15%)되어 적용됨. 단, 미국의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율 및 부과 기준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에, 우리 기업은 관세 조치에 대한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해당 물품은 무역법 제301조 대상 품목으로, 한국 내 실질적 변형을 입증하지 못해 중국산으로 판정될 경우 기본관세 외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등 원산지 검증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 이에 국내 기업은 완제품의 원산지뿐 아니라 주요 부품과 소재의 조달 구조와 생산공정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품목분류 또는 원산지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 CBP 사전심사 신청 및 CROSS 유사 선례 검토를 통해 통관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함

미국 통관 리스크 사전점검 방법

구분	CROSS 유사 선례 검토	CBP 사전심사 신청
활용목적	타사 제품의 유사 사례(품목분류, 원산지 판단 기준 등)에 대한 CBP 판단(논리) 사전 확인	원산지 판단 및 원산지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공식 판단 요청
활용시점	수출 전 유사 사례를 먼저 검토할 경우	유사 사례만으로 판단이 어렵거나 거래 금액, 관세 리스크가 큰 경우
	공통 사항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예: 구성재료, 제조공정 등) • 원산지 판정(예: 생산국, 공정별 수행 국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표시 방법(예: 라벨, 포장, 표시 문구 등) • 원산지 관련 쟁점(예: 무역법 제301조 적용 여부 등)
기대효과	미국 세관의 기존 판단 경향을 파악하여 통관 리스크 사전점검	CBP의 구속력 있는 판단을 확보하여 불확실성 완화
유의사항	유사 선례는 참고자료이며, 자사 제품에 자동 적용되지 않아 개별 판단 필요	사실관계와 제출자료가 명확하여야 하며, 제품 사양, 공정 변경 시 재검토 필요
url	https://rulings.cbp.gov/home	https://erulings.cbp.gov/s/ (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u5bJT42VcQA)

실무상 미국의 원산지 판정은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사례 분석이 매우 중요하므로, 실제 CBP 원산지 판정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심층 분석 보고서」를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한국원산지정보원 공식 홈페이지 - 신통상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